新외감법


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ㅅㅢㅏㅏㅏㅇ 안내


## -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법10조 (1), (2)-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간으로 단축*

*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함으로써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목적

| 구 분 | 감사인 선임기한 | 기한 예시 <br> (12월 결산법인 가정) |
| :---: | :---: | :---: |
|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1) |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18.12.31 |  |
|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부 4개월 9 내 | $\text { '19. } 4.30$ |
| 이 외 회사 | 사업연도 개시일븐 45 힐 이내 | '19. 2.14 |
| (*1)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  |
| (1)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br> (2)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워한 금융회사 |  |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5 조원(상장사논 2 조원)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금 융투자업자(*), 자산7천억운미반 상호저축은행
(*)집합투자재산•투자열입재산 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 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유의사항>

(1)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선임기한 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이 아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 일이내임. 단, 이 경우 감사인 선임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
(2) 10 월 결산법인부터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함. 선임기한 미준수 시 감사인 지정 조치 대상이므로 사전 준비 필요

## ㅁ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변경 (법 10조 (4)-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1) 감사인 선임권자 변경 (회사 $\rightarrow$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 구분 | 감사인 선임권자 |
| :---: | :--- |
|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 <br> 장주식회사(*1), 금융회 <br> 사(*2)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 감사위원회가 선정 <br> (2) 그 외 :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br> ※ 직전 감사인을 재선정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음 |  |
| 회사 | (1) 감사가 선정 <br> (2)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 : 그 감사인으로 선임 <br> (증선위 선임보고 불필요-법 12조(2)3호) <br> (3)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 회사가 선정(단, 자본급 10 억원 이상의 유 <br> 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영13조(1) |

*1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2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협은행

##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영 12조(1)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 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만, 해당되는 인원 이 7 명에 미달할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랕으로 구성 가능
(1) 감사 1 명
(2) 다른 법령에 따라 선얌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3)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 인 . 지배주주(특수관졔자 포함) 인 기관투자자는 제외
(4) 직전 사업연도말 기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및 임원인 주주는 제외

- (3)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는 제외
(5)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 기준 채권액이 가장 많은 2 개 금융회사의 임원 각 1 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인 금융회사는 제외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 지 소유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


## <유의사항>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 1천억원 이상 조건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 기 준임
(2) 2019년 감사계약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 의 경우에는 감사계약 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필 요. 특히, 감사계약 체결기간이 단축된 첫해이고 채권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중복이 예상됨 에 따라 일정 사전 협의가 필요
(3) 개정전 비상장회사의 경우 동일한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고려하여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보고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개정 외감법에 의해서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전기 동일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 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되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 (2) 3 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대상 확대(법 10 조 (3)-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도 연속하는 3 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유의사항>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2년이상의 기간에 대해 임의로 감사계약을 기 체결한 경우, 외감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계약기간이 남았음엫도 개정 외감법을 준수하여 2019년에 3년기간에 대한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함.
<참고사항>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중 추치적자정제 해당회사(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는 2019년도에 3년 계약하게 되며 이 경우 동 감사계약 종료연도(2021년)까지는 주기적지정 유예됨.

## (3)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법 9조, 9조의2)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회계법인" 만 수행하도록 자격 요건 강화(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특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가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음(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유의사항>

주권상장법인이 계약체결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 계약기간이 남 아있는 경우에도 2020년에 대한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함
(4)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의 문서화 및 사후확인(법 10조 (5), (6, 영13조 (3)~(5)-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구분 | 내용 |
| :---: | :---: |
| 감사인 선정기준과 절차의 문서화 | (1)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 필요인력에 관 한 사항을 문서화 <br> (2)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함 <br> -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br> -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br>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전기 감사 사후평가 내용 등 <br> (3) 감사위원회 미설치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 사는 상기 사항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필요 |
|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필수) |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아래 사항을 문석화 <br> (1) 감사인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결갸 <br> (2)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추요 발언내용 |
| 이행여부 사후 확인 | (1)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기 준의 이행 여부를 매년 확잉 <br> (2) 감사위원회 미설치 주권창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 사는 이행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 |

<유의사항>
18.11.1 이후 선임하는 감사인부던적용대상이므로 $17 \sim 18$ 사업연도에 3 년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감사 계약기간이 남이있는 주권상장번인은 문서화 적용대상이 아님

## (1) 지정대상 확대(법 11조 (1), 영 14조 - 18.11.1부터)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 구 분 | 주요 직권지정 사유 |
| :---: | :--- |
| 유지 | (1)상장예정법인 (2)감사인 미선임(3)감리결과 조치 (4)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br> (5)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6관리종목 (7)횡령•배임 발생 등 |
| 폐지 | (1)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
| 신설 | (1)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br> (2)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지요청, (3)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젝히 미달한 회사, (4)지 <br> 정기초자료 미제출 <br> (5)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6과거 <br>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7)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단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코스닥상장법인만 해당)

## <유의사항>

(1) 지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재무기준은 연졀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정보 기준임(영 14 조 (1) 호, 규정 12조 (3))
(2) 상장예정법인이 해당사업연동충에 창장되지 못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기존 지정감사인과 계 속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욱 동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던 규정이 폐지됨. 따라서 상장예정법연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요청을 다시 해야함
(3) 대표이사 변경은 i인 대표가 수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가 1 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 중 1인이 변졍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규정 시행세칙 별지 19호 서식)
(4)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직권지정 대상이 되며,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 무조사 대상 산정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5) 지정대상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추가되었음. 다 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 감사 의견변형 등으로 인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영 14조 (3) 2호)

## (2) 지정대상 판단 기준일

(1)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 개 사업연도(규정 12조(2))
(2)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규정 12조 (8)
(3) 관리종목 • 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 현재(규정 시행세칙 12조 (1))

## <유의사항>

(1) 재무기준 선정을 위한 3 개사업연도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 개사업연도를 의미함 (즉, 개정 외감법 시행일 이전 재무정보가 포함됨)
(사례) '20년에 대한 지정 대상을 19.9.1에 판단하되, '16~'18년도 재무제耳를 기준으로 판단함
(2) 과거 3 년간 최대주주 변경 2 회 또는 대표이사 변경 3 회 판단시 콰거 3 년은 지정대상선정일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 개월째되는 달의 초일) 로부터 기산학. 최근 3 개 회계기간이 아님에 유의


## ㅁ 감리 제도 변경 및 감독/재제 강화

(1)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법 26조 (1), 규정 23조, 19.4.1 이후 감리부터 적용)
(1)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
(2) 심사결과 특이사항 발견시 회사의 소명을 듣고

- 회사의 소명이 타당한 경우 종결
- 심사결과 과실이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공시를 권고하여 회사가 수정을 하면 종결(경 고조치)
(3) 재무제표 심사 결과 다음의 경우 감리 실시(규정 23조 (1) 2호)
- 심사결과 고의 • 중과실에 의한 위반혐의가 발견된 경우
- 과거 5 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 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 발견
-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매년 6월에 다음 연도에 중점 심사할 업종 및 계정 등을 공표(규정 24조 ©)
(2) 감리 절차 변경(규정 24 조 (4), (5), 30 조 (5, 19.4.1 어후 각리부터 적용)
(1) 조사과정에 대리인(변호사,임직원) 참여 가능(조사과청을 녹음, 기록하는 경우 대리인 퇴거)
(2) 조치대상자 및 감리업무 수행기관의 안건담당 임직원은 감리위원회 위원과 개별 접촉 금지
(3) 외부 감사법에 회사 및 감사인에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법 35조 (1),(2),(3), 18.11 .1 이후 작성 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횡계처례기준 위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시 과징금

| 회사 | 회사 임직원 및 감사(위원) | 감사인 |
| :---: | :---: | :---: |
| 위반금액 $20 \%$ 애내 | 회사 과징금 $10 \%$ 이내 | 감사보수 5 배 이내 |

(2)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까지 부과 가능(감리 개시 경우 시효 진행중단)
(4) 회계부정 관련 재제 강화(법 29조(1), 39조 (1),(2), 48조,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1) 회사 임원에 대한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조치 신설
(2) 회사 및 감사인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가중) 및 병과

- 징역 7 년이하 -> 10년 이하
- 벌금 7천만원 -> 이득 또는 회피 손실의 2배~5배(징역과 병과)
- 가중처벌 : 손익 또는 자기자본 분식 금액이 자산의 $5 \%$ (최소 500 억원) 이상인 경우 3 년 이 상 유기징역, $10 \%$ (최소 천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ㅁ 주요 개정사항별 시행시기

개정 외부감사법의 시행일은 18.11 .1 이며 일부 조항은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음. 주요 개정사 항별 시행일은 다음과 같음

| 시행일 | 주요 개정사항 |
| :---: | :---: |
| 18.11.1 부터 | - 잦은 경영진 변경회사 등 직권 지정지정사유 확대 <br> - 감사인 지정시기 단축 <br> - 회계위반 등 관련 증선위 보고의무 신설 <br> -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및 형사벌칙 강화 <br>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대표자 보고의무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회사 신설 등 |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4개월->45일) <br> - 3 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대상 학대 <br> - 감사인 선임권자 변경 등 선임절차 개정 <br> - 감사인 선임관련 준수사항의 문서화및 사후확인 <br> - 감사인 후보평가 및 사후평가 <br> - 감사품질관리 관련 예산비충 품질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구축 여부 등의 사항 을 공시 |
| 19.9.1 부터 | - 감사인 지정방법 개청(규정 별표3 및 4) |
|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외부감사대상 회싸(유한회사, 비상장법인 외형요건 등) <br> - 등록감사인인 상장법인 감사 가능 <br> - 상장사 손유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지정제 |
| 자산규모에 <br> 따라 순차적용 | 춘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감사로 상향 및 연결기준 확대 |

